

#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20
----------	-----

발의년월일 : 2009. 9. 30.

발 의 자 : 권순정 의원 외 5명

## 1. 제안이유

-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고, 아동·여성 보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나.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운영하며 지역연대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 및 의결,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
- 다.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홍보, 협력체계의 구축에 노력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 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사업비 지원과 출석위원에게 수당 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

### 3. 근거법규

-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라. 「아동복지법」 제4조

### 4. 담당부서 의견(사회복지과)

-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침 등에 의해 현재 수행중인 사무이며, 법률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법률과 중복적인 규정임.

### 5. 참고사항

- 아동·여성보호 관련기관 및 단체와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9. 9. 9(수), 11:00
  - 장 소 : 중구의회 회의실
  - 참석인원 : 20여명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에 따른 기관(단체) 의견수렴
  - 조치사항 : 제시된 의견중 일부 조례 반영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서울 양천구,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충북 청주시 등 4개자치단체에서 조례 시행하고 있음

### 6.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복지법」 제4조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장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지역연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되, 구 아동·여성폭력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6. 그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3장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학교주변 등 시민들이 아동·여성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요청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악성댓글 추방 인터넷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의안심사보고서

## (의안번호 720)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9. 30(수)

나. 제출자 : 권순정 의원외 5명

다. 위원회 회부 : 2009. 10. 6(금)

라. 위원회 심사 : 2009. 10. 12(월)

###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권순정 의원)

#### 가. 제안이유

-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고, 아동·여성 보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아동·여성에게 대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울산광역시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운영하며 지역연대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 및 의결,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

-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홍보, 협력체계의 구축에 노력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사업비 지원과 출석위원에게 수당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

#### 4. 근거법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아동복지법」 제4조

#### 5. 담당부서 의견 (사회복지과)

-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침 등에 의해 현재 수행중인 사무이며, 법률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법률과 중복적인 규정임.

#### 6.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서울 양천구,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충북 청주시 등 4개 자치단체에서 조례 시행하고 있음

#### 7. 검토의견 (전문위원 성낙팔)

-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아동과 여성의 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아동·여성 폭력의 사전 예방과 위기 발생시 긴급구조 등 공동

-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간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각종시책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는 사항과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에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 개별법령에 따라 해당부서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서 아동·여성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 본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과 여성의 보호시책을 보다 폭넓게 추진하여 피해자를 최소화 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 가. 수정사유

- 제9조(회의) 제2항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조항은
- 가부동수이면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맞지 않으므로 제9조 제2항의 문구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수정함

### 나. 수정내용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